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



부 산 광 역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추가) 공고 알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추가)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0-1518(2020. 5. 6.)호로 불임과 같이 우리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그 내용을 통보하오니 각 협회에서는 부산지역에 등록된 회원들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임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추가) 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0-1518호). 끝.

부 산 광 역

수신자 한국기술사회 부산지회, 한국시설안전진단협회



주무관

박정훈

건축정책팀장

김효숙

건축정책과장

전결 2020. 5. 7.

이현일

협조자

시행 건축정책과-5981

(2020. 5. 7.)

접수

우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연산동)

/ <http://www.busan.go.kr>

전화번호 051-888-4282

팩스번호 051-888-8499

/ baram1034@korea.kr

/ 대국민 공개

시민이 주인인 시정 참여 도시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0-1518호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추가) 공고

「건축물관리법」 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을 위한 등록명부 작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모집(추가)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6일
부산광역시장

1. 공고개요

가. 공고기간 : 2020. 5. 6.(수) ~ 2020. 5.26.(화)

나. 공고장소 : 부산광역시, 구·군 및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2. 모집기준

가. 모집목적

○ 「건축물관리법」 제13조 내지 제16조에 따른 건축물 정기점검, 긴급 점검 등 건축물관리기관 지정을 위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 모집

나. 등록자격 ▷ 세부요건 불임2 참조

○ 「건축물관리법」 제18조제1항 및 「건축물관리법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자,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안전진단전문기관, 건축분야 기술사사무소 등록자로서 공고 마감일까지 부산광역시 내에서 등록한 기관(업체)

○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

3. 등록신청

가. 신청기간 : 2020. 5. 6.(수) ~ 2020. 5.29.(금)

나. 제출처 : 부산광역시청 건축정책과

우)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다. 제출방법 : 방문, 우편, e-메일 접수(baram1034@korea.kr)

※ 마감일 18:00까지 도착되는 신청서까지 유효하며, 가급적 우편으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e-메일 접수시 파일은 PDF 파일로 변환하여 최대 5Mbyte 미만으로 제출 요망(파일명칭 : 건축사사무소명-건축사 성명.PDF)

라. 제출서류 > 붙임1 참조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신청서
- 기술인력(건설기술 경력증명서 포함) 및 장비 보유 현황
 - ※ 경력증명서와 장비보유 현황 파일 용량 5Mbyte 미만
- 자본금 보유 증명서류(안전진단 등록 기관에 한함)
 - ※ 자본금 보유 증명서류는 법인등기부 등본 제출

4. 기타사항

- 가.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0-823호(2020. 3.11)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모집 공고하여 등록된 기관(업체)은 본 공고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등록신청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등록된 것으로 봄(별도 등록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등록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별도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 명부 작성시 제외될 수 있음
- 다.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 명부에 등록된 기관만이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음
- 라.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자격기준 미달 등 건축물관리법 제18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법 제25조에 따라 처분될 수 있음
- 마. 정기점검분야 등록 관련하여 대상 규모별 등록 요건이 될 경우 중복 체크 가능하며, 교육은 점검전까지 이행하여야 함
- 바.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과 관련하여는 우리시 건축정책과(051-888-4282), 지정과 관련하여는 구군 건축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신청서
 2.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요건
 3. 건축물관리점검자 자격·교육 요건. 끝.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1. 능력요건에 따른 자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안전진단 기관으로 능력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2.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각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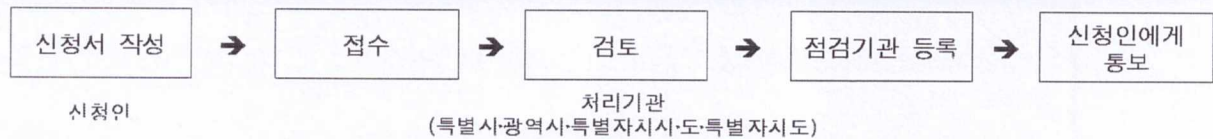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접수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업자등록증명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 기술인력(작성 예시)

	인원	성명	자격	비고
총계	6명			
건축사, 특급기술인	2명	김길동 홍길동	건축사 특급기술인	
건축사보, 고급기술인	1명	박길동	건축사보	
중급기술인	2명	엄길동 최길동	중급기술인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1명	이길동	초급기술인	

붙임 : 증빙자료(건축사자격증, 건축사보 등록증,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 장비 보유 현황(작성 예시)

장비 보유 목록	구비여부 (갯수)	비고
망원경	(개)	
균열폭 측정기	(개)	
레이저 거리측정기	(개)	
열화상카메라	(개)	
전자내시경	(개)	
측량기(수준,각도 측정용)	(개)	
기타	(개)	기타장비 내역 기재

붙임 : 증빙사진

[붙임2]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요건(건축물관리법시행령 제12조제2항 관련)

1. 정기점검, 긴급점검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기관

가. 기술인력: 점검대상 규모에 따른 다음의 기술인력을 모두 갖추어 것

구분	점검대상 규모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 표 1에 따른 건축구조, 건축시 공 또는 건설안전 전문분야의 특급건설기술인	1명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 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 표 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의 초급건설기술인 이상인 사람	2명 이상	3명 이상	4명 이상

나. 장비: 다음의 장비를 모두 갖추어 것

- 1) 망원경, 균열폭측정기
- 2) 레이저 거리측정기
- 3) 열화상카메라
- 4) 전자내시경
- 5) 측량기[수준(水準)·각도 측정용]

구분		점검대상 규모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1. 자본금		해당없음		
2. 기술 인력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또는 「건설기 술진흥법」에 따른 건 축(건축구조, 건축시 공) 또는 안전관리(건 설안전)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	1명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나.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의 자격요건 을 갖춘 사람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 의 초급기술인 이상	2명 이상	3명 이상	4명 이상
3. 장비		가. 육안검사 : 망원경, 균열폭측정기 나. 레이저 거리측정기 다. 열화상카메라 라. 전자내시경 마. 측량기[수준(水準).각도 측정용]		

2. 안전진단 기관

구분	요건
가. 자본금	1억 이상일 것
나. 기술인력	다음의 기술인력을 모두 갖추는 것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이 경우 건축사 또는 건축 직무분야 특급건설기술인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 실적이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 또는 건설안전 전문분야의 특급건설기술인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 또는 건설안전 전문분야의 중급건설기술인 이상인 사람: 3명 이상. 이 경우 건축 직무분야 중급건설기술인 이상이 60% 이상이어야 한다. 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 또는 건설안전 전문분야의 초급건설기술인 이상인 사람: 3명 이상
다. 장비	다음의 장비를 모두 갖추는 것 1) 균열폭측정기(7배율 이상이고, 라이트 부착형일 것) 2) 반발경도측정기(교정장치를 포함할 것) 3) 초음파측정기(초음파 전달시간을 0.1μs까지 분해가 가능할 것) 4) 철근탐사장비 5) 철근부식도측정장비(자연전위법 또는 전기저항법으로 측정이 가능할 것) 6) 염분측정장비 7) 코어채취기 8) 도막(도료 피막) 두께 측정장비(측정범위가 0.1mm 이하일 것) 9) 측량기[수준(水準)·각도·거리 측정용] 10) 강재비파괴시험장비 가) 자분(磁粉)탐상기 나) 초음파시험기 11) 진동측정기 12) 정적 변형측정장치

비고: "자본금"이란 법인인 경우에는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붙임 3]

책임점검자 및 점검자의 자격기준(건축물관리법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3항 관련)

구분	점검책임자	점검자
1. 정기점검, 긴급점검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건축기계설비 및 실내건축 전문분야는 제외한다) 또는 건설안전 전문분야의 특급건설기술인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건축 직무분야의 초급건설기술인 이상인 사람
2. 안전진단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는 건축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건축기계설비 및 실내건축 전문분야는 제외한다)의 특급건설기술인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건축 직무분야 또는 건설안전 전문분야의 초급건설기술인 이상인 사람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가 받아야 할 건축물관리 교육(제13조제4항 관련)

1. 교육시간

가. 정기점검, 긴급점검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경우

1) 신규교육: 7시간. 다만, 점검책임자의 경우 35시간으로 한다.

2) 보수교육: 7시간

나. 안전진단의 경우

1) 신규교육: 70시간

2) 보수교육: 14시간

2. 교육방법: 사이버교육 및 집합교육

3. 그 밖의 사항

가. 보수교육은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3년마다 실시한다.

나. 제1호나목의 안전진단 교육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